



Additional list of eligible
COVID-19 incentive
taxpayers ^{P1}

Stamp Duty Collector ^{P2}

COVID-19 관련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확대

2021년 10월 26일에 재무부는 COVID-19에 따른 과세특례에 대한 규정 PMK-9¹의 확대를 위하여 재무부 규정 PMK-149²를 발표하였습니다. 기존에 발표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서는 [TaxFlash No. 04/2021](#) 및 [TaxFlash No. 13/2021](#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동일하게 유지되며, 혜택도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:

1. 적절한 납세의무자의 근로자가 정규소득이 IDR 200 million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Article 2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는 정부가 부담합니다.
2. Article 22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적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면제됩니다.
3. 적절한 납세의무자는 Article 25 월선납법인세에 대하여 50%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
4. 정부령 No.23 Year 2018(GR-23)에 따라 0.5%의 최종분리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분도 정부가 부담합니다.
5. 관개 용수 활용(*Program Percepatan Peningkatan Tata Guna Air Irigasi/P3-TGAI*)을 개선하기 위한 가속화 프로그램하에서 납세자가 건설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최종분리과세를 정부가 부담합니다.
6. 적절한 납세의무자는 최대 IDR 5 billion 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¹ MoF Regulation No.9/PMK.03/2021 (PMK-9)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.82/PMK.03/2021 (PMK-82)

² MoF Regulation No.149/PMK.03/2021 (PMK-149) dated and effective on 26 October 2021

적격한 납세자 리스트

PMK-149 는 소득세 22 조, 25 조,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한 혜택에 다음과 같이 적격한 납세자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:

- a. Article 22 수입원천징수세 혜택 – 기존 132 개 KLU 에서 **397 개 KLU** 로 변경됨. 특정 대규모 및 소매 트레이딩, 엔터테인먼트, 아트, 기타 창조적 활동 등이 추가되었음(Attachment J 참고).
- b. Article 25 월별 선납소득세 혜택 – 기존 261 개 KLU 에서 **481 개 KLU** 로 변경됨. 특정 대규모 및 소매 트레이딩, 헤드헌팅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음(Attachment O 참고).
- a. VAT 혜택 – 기존 132 개 KLU 에서 229 개 KLU 로 변경됨. 특정 대규모 및 소매 트레이딩, 선박 및 보트 산업 등이 추가되었음(Attachment R 참고).

납세자는 과세특례 적격성에 대하여 반드시 규정 원문([PMK-149](#))의 KLU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PMK-149 에 신규로 포함된 적격한 납세자의 의무사항

PMK-19 에 신규로 포함된 납세자가 과세특례를 받기 위하여는 하기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:

특례	적용기간	요구사항
Article 22 Income Tax exemption	세금면제 서한의 발행시점	세금면제 신청서 제출필요
Article 25 Income Tax reduction	2021 년 10 월 부터 12 월 까지	2021 년 11 월 15 일까지 통지서 제출
Preliminary VAT refund	2021 년 10 월 부터 12 월까지	월별 부가세 신고서의 제출(수정신고 포함). 12 월 부가세신고서는 2022 년 1 월 31 일까지 제출필요

기존의 적격한 납세자의 보고 의무

기존의 재무부 규정하에서 부가세 조기환급 적용이 가능한 부가세 과세대상기업이 PMK-149 를 적용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 년 1 월 – 6 월 기간은 7 월 31 일까지 2021 년 7 월 – 12 월 기간은 2022 년 1 월 31 일까지 부가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(수정신고 포함).

또한, PMK-149 는 2021 년 1 월 - 6 월 기간동안의 Article 21 및 최종분리과세 혜택에 대한 실행보고서 제출기한을 2021 년 11 월 30 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(기존 규정상 2021 년 10 월 31 일까지).

인지세(Stamp Duty) 징수자(Collector)

2021년 10월 27일에 재무부는 인지세의 징수, 납부 및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지세 징수자에 대한 재무부 규정 PMK-151³을 발표하였습니다. 인지세 징수자는 인지세법 제 10호 (2020년)에 신규로 도입된 개념입니다. 동 법에 자세한 사항은 [TaxFlash No. 44/2020](#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DGT는 아래 분류에 따라 인지세 징수자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위임서한을 발행하여야 합니다:

1. 납세자가 수표의 발행 및 요구불 예금(bilyet giro)을 취급하는 경우.
2. 납세자가 하기의 서류를 월별 1,000건 이상 발행하거나, 발행을 취급하는 경우:
 - a. 선물계약거래 서류를 포함한 증권 거래 서류;
 - b. 참조서한(reference letter), 확인서한(statement letter)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나 사본;
 - c. IDR 5 million 이상의 금액을 명시한 문서로서 금액의 수령, 채무지불 및 결제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는 문서.

납세자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나 인지세 징수자로서 위임장을 받지 못한 경우, DGT에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납세자가 상기 조건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DGT는 인지세 징부자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인지세 징수자의 행정사항

인지세 징수자는 징수한 인지세를 익월 10일까지 국고청(State Treasury)에 송금하여야 하며, 익월 20일까지 월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납세자는 인지세의 전용(overbooking)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타 세목의 신고서 수정과 유사한 절차로 월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월별 신고서의 서명, 행정 벌과금의 처분, 신고서의 수정 등은 국세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³ MoF Regulation No.151/PMK.03/2021 (PMK-151) dated and effective on 27 October 2021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@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pwc.com

Hisni Jesica
hisni.jesica@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pwc.com

Soeryo Adjie
soeryo.adjie@pwc.com

Amit Sharma
amit.xz.sharma@pwc.com

Kianwei Chong
kianwei.chong@pwc.com

Sujadi Lee
sujadi.lee@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pwc.com

Susetiyo Putranto
susetiyo.putranto@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@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@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pwc.com

Avinash Rao
a.rao@pwc.com

Marlina Kamal
marlina.kamal@pwc.com

Tim Watson
tim.robert.watson@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pwc.com

Nicholas Sugito
nicholas.sugito@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pwc.com

Nikolas Handradjid
nikolas.handradjid@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pwc.com

Dexter Pagayonan
dexter.pagayonan@pwc.com

Oki Octabiyanto
oki.octabiyanto@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pwc.com

Omar Abdulkadir
omar.abdulkadir@pwc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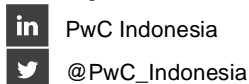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pwc.com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pwc.com

www.pwc.com/id

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@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1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